

손 소독제

I 사례 개요

사 례 번 호: NY N356739 (2026.01.02.)

쟁 점 사 항: 원산지 표시 및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최종 수출국: 중국

최종 원산지: 베트남



II 사실관계

| | | |
|-------------------|--|---|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를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젤 형태의 손 소독제 | |
| 재료 |  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제품의 62% 차지) |
| | 기타 국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 글리세린 • 아크릴레이트 • 식물성 추출물 • 착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부틸 알코올 •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 아미노메틸 프로판올 • 포장재 |
|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  <p>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sourcing and manufacturing process for hand sanitizer. It is divided into four main stages: Sourcing, Manufacturing 1, Manufacturing 2, and Expo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urcing: Raw materials are sourced from India, Vietnam, Malaysia, and the USA. The process involves the production of glycerin, acrylate, and plant-based extracts. Manufacturing 1 (Vietn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원재료 수입 (Raw material import) STEP 2: 알코올 제조 (Alcohol production) STEP 3: 벌크 혼합물 생산 (Bulk mixture production) STEP 4: 각종 테스트 진행 (Various tests conducted) Manufacturing 2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벌크 혼합물 수입 (Bulk mixture import) STEP 2: 물, 착색제, 향료 추가 (Addition of water, colorant, and fragrance) STEP 3: 균질화 공정 수행 (Homogenization process) STEP 4: 충전 및 소매 포장 (Filling and retail packaging) Export: Final export to China. | |
| 상세 공정 |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리세린, 아크릴레이트, 식물성 추출물 등의 원재료 생산 |
| |  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국가산 원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입 및 조달 • 알코올 제조 • 베트남산 알코올과 기타 원재료를 계량, 균질화 및 혼합하여 벌크 혼합물 생산 • 혼합기를 사용해 고전단 혼합 공정 수행 • pH, 미생물 함량 및 안정성 테스트 |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으로부터 벌크 혼합물 수입 • 물로 희석 후 착색제와 향료 추가 • 고전단 균질화 공정 수행 • 소매용 용기에 충전 및 포장 |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성분들이 계량, 균질화되며 안정적인 벌크 형태 혼합물이 생산되는 베트남이 원산지라고 주장

《CBP의 판정》

- ⊙ 알코올을 다른 성분들과 함께 가공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 손 소독제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알코올 성분이며, 알코올이 생산된 베트남이 원산지임

→ 원산지 표시 및 추가 관세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

IV 시사점

- ⊙ CBP는 일반적으로 스킨 케어 제품, 메이크업 제품 등에 대해 여러 성분들을 계량, 균질화, 혼합하여 안정적인 벌크 혼합물을 생산하는 곳을 원산지로 판정하는 바, 신청인 또한 이를 근거로 손 소독제의 원산지를 해당 공정이 이루어진 베트남으로 주장한 것으로 추정됨
- ⊙ CBP는 신청인이 주장한 원산지와 동일하게 베트남을 최종 원산지로 판정하였으나, 그 근거는 벌크 형태의 혼합물 생산이 아닌 알코올 생산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이, 생산 과정에서 특정 원재료를 단순히 희석하는 경우 혹은 특정 원재료가 최종 제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인 경우에는 특정 원재료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함

유사 제품에 대한 CBP의 참고 판정 사례

| | |
|-------|---|
| 물품명 | 바디 로션 |
| 사례번호 | NY N351352 (2025.07.24.) |
| 쟁점사항 |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 사실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공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국가산 원료(유화제, 방부제, 오일, 안정제, 보습제 등)를 수입- 계량, 가열, 혼합, pH 및 미생물 검사 등을 통해 벌크 형태의 제형 생산• 중국 공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산 벌크 형태의 제형을 수입- 소매용 용기에 포장 |
| 판결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량, 가열, 혼합 등의 공정을 통해 벌크 상태의 혼합물을 생산한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